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조승래・이정문・박정현

황정아 · 김용만 · 한준호

박상혁 • 이병진 • 노종면

서영석 · 장종태 · 위성곤

박지원 · 정준호 · 윤호중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.

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·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21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(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	제121조(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
구) ① ~ ⑤ (생 략)	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
	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, 국무
	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
	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
	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
	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	<u> 처한다.</u>